

## 근로계약서(일용)

○○○○(주) \_\_\_\_\_ 현장소장 \_\_\_\_\_ (이하 "갑"이라 칭함)와 근로자 \_\_\_\_\_ (이하 "을"이라 칭함)는 노동관계법령과 당현장의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것을 서약하고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근로장소) "을"은 ○○○○(주) \_\_\_\_\_ 현장에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제 2 조 (취업직종) 직종은 \_\_\_\_\_ 이다. 단, 현장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쌍방 합의하에 "을"의 직종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 조 (고용일) 20 . . . . 이다.

제 4 조 (임금)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을"의 시급은 \_\_\_\_\_ 원으로 한다.

제 5 조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오전, 오후 각 30분으로 하고 중식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단, 동절기에는 오후 휴게시간은 취소할 수도 있다.

제 6 조 (근로시간) 기본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연장, 야간, 휴일, 주휴, 기타 등으로 근로한 소정의 시간(임금)으로 계산한다.  
단, 출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대시간, 식사 및 간식시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 7 조 (주휴일 및 월차)

- "을"이 일주일에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갑"은 1일의 유급휴일은 부여한다(일주일은 월력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 "을"이 1개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갑"은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1개월이라 함은 월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제 8 조 (안전관리) "을"은 현장 안전수칙과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정한 안전에 관한 제규칙과 안전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사고는 "을"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 9 조 (손해배상) "을"은 중대한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해고(귀가조치)) "을"이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을"을 해고(귀가조치)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될 때
2. "갑"의 사업장기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장의 시설, 기계, 기물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
4. 도박, 음주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5. 폭행, 파괴, 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동을 했을 때
6.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인명 또는 회사의 재산을 손실케 한 때
8. 신체상 장해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0. 기타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갑"이 정한 제반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 11 조 (부 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관계법규, 취업규칙 및 관계 등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안전수칙서약서 1부 .

"갑"      ○    ○    ○    ○    주    식    회    사

\_\_\_\_\_현장소장 \_\_\_\_\_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우수무인)

## 안전수칙서약서

1. 나는 모든 작업을 임함에 있어 제반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이겠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안전교육에 필히 참석하겠다.
2. 나는 작업중 나타난 불안전한 상태에 대해서 즉시 시정하겠다.
3. 나는 작업장내에서 향시 공사공정에 따른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착용을 철저히 하겠다.
4. 나는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어도 무면허운전, 무단운전, 음주운전, 적재함 탑승, 정원외 승차 등을 절대 하지 않겠다.
5. 나는 모든 사용공구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겠으며, 장비와 기계는 사용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취하겠다.
7. 나는 재해발생시 즉시보고 및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재해상태를 극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제3자가 인정하는 나의 중대한 과실(개인보호구 미착용, 음주운전 등)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보상금 및 합의금 일체를 요구하지 않겠다.
9. 나는 작업중 또는 작업시간 외에도 결코 난잡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수행하겠다.

[개인보호구 수령내역]

종 류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각반	보안경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수 량							
수령인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위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 . .

서약인 : 직 종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우수무인)

현장소장 귀하